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14
----------	-------

발의연월일 : 2019. 11. 11.
발의자 : 강석진 · 윤준호 · 김성찬
이양수 · 손금주 · 경대수
황주홍 · 오영훈 · 손혜원
박주현 · 박완주 · 이만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협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배양하고”를 “기르고”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적용에 있어서”를 “적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교육 위원회) ① · ② (생 략)	교육 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로서</u> 위원장이 추천한 <u>자로</u> 한다.	③ ----- ----- ----- ----- ---- <u>사람으로서</u> ----- <u>사람으로</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별 칙 <u>적용에 있어서</u> 공무원의 제) 제18조에 따른 국가 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u>자와</u>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u>자</u> 중 공무원이 아닌 <u>자는</u>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 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별 칙 <u>적용에서</u> 공무원의 제) ----- ----- ----- ----- <u>사람과</u> ----- ----- <u>사람</u> ----- ----- <u>사람은</u> ----- ----- -----.